

공사계약일반조건등 개정 회계예규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는 정부공사등의 압찰에 있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보호에도 중점을 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맞춰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17건의 회계예규 및 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을 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1. 공사계약일반조건

가.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 5)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방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등에 정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조정청구등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회신토록 함

○ 사유

계약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 회신하도록 규정화 함.

나. 채권양도 승인절차 보완(§ 6)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함

○ 사유

채권양수인에게 미통지시 발생될 수 있는 민사적 문제점(선의의 제3자 보호문제)을 방지

다. 공사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 9) 명확화(§ 9)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계약시 연대 보증인을 입보 <p>- 다만, 계약보증금의 2배는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토록 함 - 계약보증금 + 시공연대보증인 - 계약보증금 2배 -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30%)

○ 사유

- 공사이행보증방법 선택을 명문화하여 연대보증인 입보강요사례 방지
- 시행령 제52조 개정내용 반영

라.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보완(§ 10)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 PQ공사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가입 대상공사외에도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사유

손해보험가입 의무대상공사 외에도 계약상대

자가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이행중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마. 설계변경등의 시기 및 계약금액조정절차 명문화 (§ 19~ § 21, § 23)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은 공정이행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토록 함 (§ 19)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 - 조정청구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계산시 불산입 • 턴키 등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21) •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23)

○ 사유

- 설계변경시기 및 계약금액조정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도모

- 시행규칙 제74조의2 및 제74조의 3의 규정(신설)내용 반영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 (§ 22)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지수조정율을 적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품목조정을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청구내용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간계산시 불산입

○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 함

- 시행규칙 제74조 개정내용 반영

사.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 (§ 25)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 - 다만,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 시정조치후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 • 준공기간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도 지체일수에 산입 하되 각각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

○ 사유

- 지체일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체일수 산정과 관련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함

- 기존 유권해석내용 반영

야. 기성검사 절차 간소화 (§ 27)

현 행	개 정
<신 설>	•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감사에 같음

○ 사유

- 기성검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행령 제55조 개정내용 반영

자.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규정 마련(§ 47)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사유

-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보상 (공공사업효율화 대책내용 반영)

차.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권 근거 마련(§ 47의2)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문서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 발주기관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공기연장을 하여야 함

○ 사유

-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이행의무 불이행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이행정지권을 부여하여 계약당사자는 상호대응한 입장에 위치함을 분명히 함
- 공사효율화 추진사항 반영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가.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 5)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나. 채권양도등 승인절차 개선(§ 6)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를 목적으로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서면승인없이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제조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음 	

○ 사유

- 공사, 용역등과 같이 채권양도 규정마련
- 제작자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하청 승인에 관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

다. 물기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 11)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라. 물품납품절차 개선(§ 13)

현 행	개 정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비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납품할 것을 의무화

○ 사유

- 국가등의 공공물자조달시에는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표준화 규격을 준수하도록하여 산업표준화 시책부응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모

마.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 24)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당사자간 성실한 회신의무 명문화(§ 6)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나. 채권양도등 승인절차 개선 (§ 7)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불가 • 정부의 서면승인없이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이행을 목적으로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삭제>

○ 사유

- 공사와 같이 채권양도 절차규정 마련
- 하도급 승인에 관한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

다. 기술용역계약이행보증방법 선택절차 명확화 (§ 10)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 보완 (§ 15)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마.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절차 명문화 (§ 16, § 17)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바.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일수 산정방법 명확화 (§ 24)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사. 기술용역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근거 마련 (§ 32)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아.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권 근거 마련 (§ 32의2)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용과 동일

4. 공사입찰유의서

가.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 보완 (§ 8)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서부터 입찰개시시간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 또한 동기간동안 가능하도록 함

○ 사유

- 대리인 지정 및 변경의 시기를 명확하게 함
- 시행규칙 제42조 개정내용 반영

나.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 (§ 9)

현행	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의 입찰서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사유

- 입찰서상 입찰자란에 반드시 대표자성명을 기재토록 규정하여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다.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 15)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권이 없는 자 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직접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리인(입찰개시시각전까지 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대표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사관련법령에서 정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사관계법령에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사의 입찰에 있어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입찰

○ 사유

- 대리인, 입찰자등과 관련된 입찰무효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입찰유무효 판단시 계약담당자

의 임의적 판단소지를 제거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동일 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 방법 보완 (§ 18)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동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사유

적격심사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동가, 동점수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절차를 명확하게 함

5. 물품구매입찰의의서

가.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 보완 (§ 7)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나.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 (§ 8)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다.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 12)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라.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 보완 (§ 16)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6. 기술용역입찰의의서

가. 입찰참가 대리인의 지정등 절차보완 (§ 7)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나. 입찰서의 작성방법 보완 (§ 8)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다.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 12)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라. 동일가격 입찰시 낙찰자결정방법 보완 (§ 15)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내용과 동일

7. 적격심사기준

가. 대안입찰의 적격심사방법 개선 (§ 4, § 7, § 8)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사와 동 일하게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후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로 적격심사와 같이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자를 실제 설계적격자(기본설계대안입찰인 경우)또는 낙찰자(실시설계 대안입찰인 경우)로 결정

○ 사유

— 대안입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격심사방법 개선

— 시행령 제85조, 제86조 개정사항 반영(공공 사업효율화 대책내용 반영)

나. 심사서류 제출관련 절차 보완 (§ 4)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또는 독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제출 기한 경과시에 는 서류 제출을 허용하지 않음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요구토록 함

○ 사유

— 미비 또는 불명확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수정 제출을 불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문제점 해소

다. 공사규모별 심사항목등 조정(별표)

○ 사유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됨에 있어 소 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신규업체등 중소기업체의 경우도 수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 소규모공사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그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함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공사 □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이 6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비율이 1.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 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 □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이 6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비율이 1.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50억미만~10억이상 공사 □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누계액이 3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30억미만 공사는 2배를 만점으로 함)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비율이 3.0미만인 경우 만점으로 함 ○ 추정가격 10억미만 공사 □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이 2배인 경우 만점으로 함(5억 미만인 경우 1배를 만점으로 함) ※ 시공경험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 신고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 이상 이 되도록 함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그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 이상이 되도록 함

8.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 사전심사기준중 신인도 분야등의 평가방법 개선(별표)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 감자를 중요한 경영상태의 변경 요건으로 추가 ※ 사유 유상증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경영상태 변경요인으로 추가 -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등의 경우 합병등을 한 날부터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합병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이를 평가

9. 공동도급계약운용 요령

가.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범위 명확화(§ 7)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선금 회수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시공등의 의무이행만 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 사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선금에 대한 책임여부를 분명히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보완(§ 12)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등으로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계약 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사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추가 가능함을 분명히 함(감사원 통보사항 반영)

다. 공동수급체구성원 제제 규정보완(§ 13)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 제제 조치 조처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담당 공무원은 실제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원별 계약이행 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음 실제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단순한 자본참여만 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자제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불이행시 제재조치 여부를 명확히 함(감사원 통보사항 반영)

1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가. 원가계산기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제5장)

현 행	개 정
• 등록요건	• 등록요건을 원가계산용역 수행요건으로 용어변경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 지부의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 지부에 대한 용역수행요건을 삭제하여 지사, 지부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함 - 타 용역기관과의 형평성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나. 기타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9) - 상여금:년 400% • 일반관리비(§19) - 시설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로 구분 • 외국통화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 - 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여 일간신문에 고시하는 외국환은행 대 고객 전신환매도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 *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상함을 분명히 함 - 소방공사, 기타공사의 경우도 전문, 전기공사등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 금융결제원에서 외국환은행 등에 통보하는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 * 변동환율제 하에서의 적용환율 일원화

11. 내역입찰집행 요령

□ 산출내역서 조정방법 개선(§5)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입찰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산출 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 배분함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

-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균등 배분

- 일반관리비 등의 법정요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함

○ 사유

-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명확하게 함

12. 선금지급 요령

가. 사고이월공사의 선금지급방법 개선(§2)

현 행	개 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 의무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

○ 사유

사고이월되는 경우 지급한 선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번잡성을 해소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에 따른 회수불가능 문제 및 약정연대보증인의 피해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

나. 선금보증서 보증기간 연장(§3)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종료일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일 이상으로 조정

○ 사유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에 따른 공사지연을 선금보증기간경과시 선금채권확보가 곤란해지는 문제점 해소

- 계약보증금 보증기간과 일치시킴

다. 선금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4)

○ 사유

- 선금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선금잔액확보가 용이토록 함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상대자는 선금청구시 및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를 대금수령계좌와 별도로 관리하고 선금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제출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13. 대형공사설계비 보상요령

○ 설계비 보상금 상향조정등 (§ 3, § 4)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예산의 1%를 설계비 보상예산으로 확보 설계보상비의 1/3을 낙찰탈락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로 상향조정 설계보상비(공사예산의 15/1000)를 낙찰탈락자의 설계점수 순으로 각각 7/15, 5/15, 3/15을 지급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에는 설계점수 순으로 각각 7/15, 5/15를 지급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설계보상비의 1/3을 지급

○ 사유

턴키입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보상비를 상향조정하고, 보상비가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으로써 효과적인 설계경쟁을 유도함

14.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금액 결정방법조정 (§ 3)

—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세분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전차공사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공사금액별 적격심사내용에 맞추어 세부화 함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다음의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9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낙찰의 수의계약시 전차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를 다음과 같이 조정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3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15.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등 보완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등 인정한 공사를 추가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등 28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8개 공사외에 발주기관의 장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특별히 인정한 공사를 추가 ※ 사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당해공사의 특성, 특수한 기술의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적용토록 함

16.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 하수급예정자 변경관련 사항 보완

현행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급예정자가 부도등의 사유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부대입찰조건에 따라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다만,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